

과징금 산정기준(제3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·영업정지처분 전년도에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창업·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,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.

2. 과징금 기준

등급	연간매출액(단위: 원)	1일 과징금(단위: 원)
1	1억 이하	23,000
2	1억 초과 ~ 2억 이하	68,000
3	2억 초과 ~ 3억 이하	110,000
4	3억 초과 ~ 4억 이하	150,000
5	4억 초과 ~ 5억 이하	190,000
6	5억 초과 ~ 7억 이하	250,000
7	7억 초과 ~ 10억 이하	330,000
8	10억 초과 ~ 15억 이하	410,000
9	15억 초과 ~ 20억 이하	500,000
10	20억 초과 ~ 25억 이하	600,000
11	25억 초과 ~ 30억 이하	700,000
12	30억 초과 ~ 40억 이하	820,000
13	40억 초과 ~ 50억 이하	950,000
14	50억 초과	1,100,000